

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8.24.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자원순환기본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질서 위반행위규제법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라.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사항 (안 제5조)
- 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순환기본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2018. 7. 23. ~ 2018. 8. 12.(20일간)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 권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 권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,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과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, 「자원순환기본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7조제4항”을 각각 “법 제12조제3항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법 제31조제1항”을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원재활용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제1항”으로,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서초구민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초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초구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「자원재활용법」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,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획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려금 등의 지급)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,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·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“구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6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

획 수립·시행) ① ----- 법 제12조제3항-----

② ----- 법 제12조제3항----

----- 서울특별시-----

제4조(장려금 등의 지급) -----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원재활용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제1항-

- 서울특별시 서초구민-----

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 ----

----- 서울특별시 서초구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해 보고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
으로 하여금 조사·검사하게 할
수 있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
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
배출자

② 조사·검사를 행하는 관계
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
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.

제7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
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
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
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
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
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
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고지
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
로 한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
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
이 경과한 날부터 15일(은행납
인 경우 50일)이내에 10일간의
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
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
발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구청장은 「자원재활용법」
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
며,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
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
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<삭 제>

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·징수가 위법·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·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(변경)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.

<삭 제>

제9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

<삭 제>

보)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

다.

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11조(체납처분) 구청장은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 한다.

<삭 제>

제12조(과태료의 귀속) 과태료 수입은 구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. 다만,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.

<삭 제>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